


International Waters 31  
X 성노동자건강권연구팀  
X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타시설  
리시설  
기획 토론회 !!  
: 성매매   
  여성과  
시설의 역사

일시.장소

6월 2일 (금) 저녁 7시~9시 30분,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강당  
(서울 마포구 환일길 13)

패널

여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 성매매 여성과 시설의 역사  
해수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 시설화된 쉼터  
도균 (성노동자건강권연구팀) : 토론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탈시설 기획 토론회 : 성매매 여성과 시설의 역사] 진행순서

사회 | 성노동자해방행동주홍빛연대차차 유원

시간	내용		
19:00~19:15	여는 발언	사회자	유원
19:20~19:50	패널 1 : 성매매 수용 시설의 역사(30분)	패널 1	여름
19:50~20:20	패널 2 : 시설화된 쉼터(30분)	패널 2	해수
20:20~20:30	쉬는시간		
20:30~20:50	토론	패널 3	도균
20:50~21:30	질의응답 및 종료		

[발표문 목차]

**발제 1** 성매매 여성과 시설의 역사 **2**

여름 | 성노동자해방행동주홍빛연대차차

**발제 2** 성노동자가 살아가는 시설사회 **27**

해수 | 성노동자해방행동주홍빛연대차차

**토론** 성노동자의 탈시설화를 위한 소고 **39**

도균 | 성노동자건강권연구팀

International Waters 31  
X 성노동자건강권연구팀  
X 성노동자해방행동주홍빛연대차차



발제 1 성노동자해방행동주홍빛연대차차 여름

성매매 여성과 시설의 역사

# 성매매 여성과 시설의 역사

2023-06-02 탈시설 기획 토론회 : 성매매 여성과 시설의 역사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여름

## 목차 Contents

2023-06-02 탈시설 기획 토론회 : 성매매 여성과 시설의 역사

01 요보호여자 시설

02 성병관리소

03 정리 : '성매매 여성' 대상 시설

04 시설화된 쉼터, 자활센터

# 과거에 성매매여성을 '수용감금'하는 시설이 있었던 사실을 아시나요?

2023-06-02 탈시설 기획 토론회 : 성매매 여성과 시설의 역사

## 요보호여자

-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자세대와 미혼모, 가출여성, 전쟁미망인, 윤락여성, 저임금 근로여성, 불우가정 여성 등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또는 기타 어떤 이유로든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여성들 포함 1)

## 요보호여자 수용시설

- 요보호여자수용시설은 윤락여성선도사업의 일종으로 '강력한 단속과 교화 및 자립갱생'2)을 위한 방안으로 사용
- 선도보호를 목적으로 격리 수용



▲1990년, 경기여자기술학원에서 여성들이 재봉틀을 돌리고 미용을 하고있는 모습. (출처: 경기도 멀티미디어 자료실)

## 경기(도)여자기술학원

###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참사



▲ "경기도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 창문 철망 때문에 희생 더 커", MBC 뉴스, 1995-08-21



▲ "경기도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 개요, 탈주 노린 방화", MBC 뉴스, 1995-08-21

##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참사

"37명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질식돼 숨지고 말았다. 이처럼 많은 목숨이 또 순식간에 한꺼번에 숨진 까닭은 강화유리로 만든 현관문과 굵은 쇠창살 창문, 그 튼튼하기만 한 갇힌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였기 때문이었다. 불이 났지만 이 건물에는 탈출구가 없었다."3)

"경기여자기술학원은 교화를 명목으로 학원생들을 구타하고 감금했으며,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엄격한 군대식 기숙사 생활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엄격한 통제에서 학원생들은 벗어나고 싶어 했다. 경기여자기술학원의 군대식 통제 생활에 불만을 가진 학원생들은 학원 기숙사를 탈출하기 위해 방화를 시도했다. 1995년 8월 21일 새벽 2시경, 학원생들은 기숙사 건물 1, 2층 숙소에 불을 내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출구와 비상구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또한 창문에도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원생들은 탈출에 실패했다."4)

# 01

## 성매매 여성과 시설의 역사: 요보호여자 수용시설

### 윤락행위등방지법 이전

-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전쟁미망인이 많이 등장, 이들 중 다수가 매춘여성이 됨. 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자매원, 부산자매원, 국립자매원 등 설치. "윤락한자 중 개종의 정이 있는 자, 또는 윤락할 우려가 있는자"를 수용해 직업보도 선도. 5)
- ◆1950년대 중반부터 서울시에서 '양공주' 소탕 목적으로 '사창 대책위원회'를 열어 경찰권 발동. 그 이유는 성병 확산 때문임.
- ◆정부는 한국전쟁 후 주둔군 지역의 성병 진료소 확대함. 6) 미군의 성병 보급률이 높아지자 미군은 성매매 여성에게 철저한 성병 검진 요구. 국내 남성 상대 성매매 여성(창녀)에게 외국인을 상대하는 여성(기지촌 여성)과 다른제도 적용. 7)
- ◆한국인 상대 성매매 여성의 '교도'와 '일반 여성'의 성매매 방지를 위해 '자매원'을 설립함. 자매원에서 이발, 미용, 양재, 타자등의 직업보도를 함. 그러나 성매매 여성 수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1950년대 후반에 시설과 수용인원 수가 오히려 감소함. (1953년 : 520개 -> 1956년 : 368개 -> 1958년 230개) 8)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9)

-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 : 1961년, 한국에서 '부녀보호'를 명칭으로 내건 시설이 최초로 설립 됨. "윤락녀미연방지책"의 일환으로 과거 "마약환자수용소로 쓰이던 건물"을 개조함.
- ◆이맘때쯤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를 비롯하여 자매원, 갱생원 등이 건물 용도가 급격히 변경되기 시작했는데, 5.16 군사쿠데타 직후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이 있었음.
- ◆군사정부는 사회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창녀'는 '깡패'와 더불어 '치안의 암'으로서 대량 검거.
- ◆서울시는 "사창의 보호선도를 위한 상담소를 두고 귀향할 곳이 없는자에 대해서는 일단 집단적으로 수용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그 결과로서 쿠데타가 발생하지 약 한달만에 서울보호소가 설립 됨.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이후, 성매매여성 '수용감금'의 시대가 열리다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 1961.11.9.] [법률 제771호, 1961.11.9 제정]

- 제7조 (보호지도소)** ① 국가는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이하 **요보호여자**라 한다)를 선도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도시 기타 필요한 곳에 보호지도소를 설치한다.
- ② 보호지도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요보호여자의 신상 기타 문제에 관하여 그 상담에 응하는 일
  2. 요보호여자의 성격, 가정 또는 그 환경 등에 대하여 원인을 탐구하고 필요한 지도를 행하는 일
  3. 요보호여자의 동태와 분포상황 등을 상시 조사파악하는 일
  4. 요보호여자의 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수용보호**를 행하는 일
  5. 요보호여자에게 선량한 직업의 알선을 행하는 일
  6. 요보호여자의 실정에 따라 그들의 가족 기타 연고자에게 귀환조치를 행하는 일
  7. 기타 선도보호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
- ③ 보호지도소에서 행하는 업무는 항상 그들의 **정신개량**에 주안을 두고 상담에 응하거나 조사, 선도, 보호 등을 행할 때에는 온정과 이해로 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친밀감과 신뢰감을 가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④ 보호지도소의 설치와 그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직업보도시설)** ① 국가는 요보호여자에 대하여 **자립경쟁의 정신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 ② 직업보도시설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은 1961년 11월 9일 제정.
- 매춘을 '윤락행위'로 지칭하고 "재산상의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성행위"라고 규정.
- 516 군사정부는 성매매를 법적으로 방지하여 풍속을 정화한다는 목적으로 윤방법에서 "윤락행위와 유인, 매개행위를 금지"함. 10)
- '요보호여자'를 정의했으나 범위가 모호한 상태로 확대됨.
- 또한 이들을 '선도보호하기위해' 보호지도소를 설치한다고 규정. 성매매는 금지였으나, 1962년 6월에 전국 104개소에 성매매 허용 특정지역 설치. 특정지역은 성매매 집결지와 기지촌을 뜻함. 11)
- 1962년 각 시·도에 부녀상담소 설치 후 부녀상담원이 요보호여성에 대해 사전 상담 실시. 상담소는 주로 역적과 터미널·공단지역과 윤락여성집결 지역에서 설치했으며, 상담소에서 직업보도소(요보호여자 수용시설) 입소를 권하기도 함. 12)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직업보도시설의 시설기준령

[시행 1963. 12. 1.] [각령 제1620호, 1963. 10. 31 제정]

- 제2조 (직업보도소의 시설기준과 직원)** ① 직업보도소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실 2. 거실 3. 주방 4. 식당 5. 욕실 6. 소방시설
  - ② 전항의 교실에는 직업보도를 받는 자(이하 '소생'이라 한다) 전원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의자와 기타 필요한 설비 및 채광 또는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거실의 넓이는 1인당 2.5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10인 이하로 한다.
  - ④ 직업보도소에는 소생의 직업보도를 위한 기술지도원과 그 교양지도를 위한 보도원이 있어야 한다.
- 제3조 (직업보도종목별 시설기준)** ① 직업보도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에 그 보도종목별로 다음 각호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양재 또는 양복의 조제기술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보도소
  2. 편물기술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보도소
  3. 이발기술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보도소
  4. 미용기술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보도소
  5. 타자기술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보도소
  6. 요리에 관한 기술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보도소
  7. 자동차에 관한 기술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보도소
  8. 관공에 관한 기술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보도소

- 1963년 10월, 윤방법에 의한 직업보도시설의 기준령을 마련해서 시설 운영 지침 구체화. 13)
- 시설에서의 여성구호는 1950년대부터 모자보호시설을 통해 '전쟁미망인'을 구호했으나, 윤방법 제정 이후 '요보호여성' 시설이 생겨난 것이 큰 차이임. 14)
- 요보호여자 시설은 시와 군이 설립한 공립 시설과 종교 또는 사회복지 법인이 세운 민간 시설로 이루어짐. 1983년 경기여자기술학원을 필두로 공립 시설도 점차 민간 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향 확산 15)
- 정부가 제공한 운영비 또는 보조금이 수용자 수에 비례했음으로 시설을 (위탁) 운영한 민간 법인은 수용 인원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었음. "한마디로,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시설이 유지되기 위해 대상이 끊임없이 창출되어야 했다." 16)

- 「윤곽행위등방지법」과 시설기준령에 따라서 1962년부터 부녀보호지도소가 지역별로 설치되었고, 통계상 명칭은 1962-69년까지 '부녀보호지도소', 1970-72년은 '부녀보호소 및 부녀직업보도소'로 구분함.
- 1973년 이후부터는 '부녀직업보도소'로만 명시됨.
- 이 구분에 따르면 1960년대에는 시설에서의 '보호'가 강조되었다면 1970년대에는 직업'보도'로 그 초점이 바뀜
- 수용인원 수 : 1960년대에 계속 증가하다가 1971년을 정점으로 1970년대 전반에는 감소, 1975년부터 다시 높아져서 1983년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됨.
- 1970년대 전반에는 시설 입소자와 퇴소자가 함께 증가하는 가운데, 시설에 수용된 인원의 총수는 감소, 1970년대 중반 이후로는 수용인원이 완만히 줄고 입퇴소자도 줄었음.
- 1980년대 초반에는 1970년대와 수용인원에서 크게 변화가 없이 현상유지, 그러다가 1984년을 기점으로 인원이 절반가량 줄었고, 입퇴소자도 감소
- 즉, 여성 수용시설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가장 많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음



## 요보호여자 수용시설 변화<sup>17)</sup>

## 시설 내부 환경은 어땠을까?

당사자 구술 중심으로  
살펴보기



## #무차별적인 수용, 체벌, 수용기한 증가

무차별적인 수용, 체벌, 수용기한 증가

“

무조건 끌고 가니까 가는 거야.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가자마자 막 때려 그냥. 기 죽이려고. (방이) 비좁지 한방에 보통 7~8명? 많으면 10명까지도 잘 때 있고 밥도 모자라. 그렇게 많지 않아. 사람이 먹는 걸 부실하게 먹는 게 제일 비참 하더라고. 나중에는 사람이 진짜 비참하게 돼. (중략) 몽둥이로 막 갈겨. 선생님들이 막 조인트를 까버려. 잘못하면. 길면 2년이야. 말 안 듣고 갱판 놓고 이러면. 1년씩 올라가. 기지촌여성들이 제일 많이 잡혀와. 한국사람 상대하는데 있는 그런 곳 인천 옐로하우스 이런 데서 오는 애들도 있고 거기서도 오는데 제일 많이 오는 데가 기지촌에서 제일 많이 잡혀와. 그 당시 직업보호소가 많았어.

”

박정미, 안태윤, 임혜경, <경기도 기지촌여성 생활 실태 및 지원정책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0, 155쪽.

## #식사, 영양실조, 체벌

식사, 영양실조, 체벌

“

국 하나 밥 하나 이렇게 그리고 반찬은 짬무지 딱 하나야. 김치 없어. (김치도 없어요?) 응. 짬무지 하나. (밥은) 새카만 보리밥. 3개월 되면 애들이 얼굴에 버짐이 막 생겨. 머리카락도 막 빠지고. 영양실조 걸리니까. 그러면 애들이 막 뭘 먹고 싶잖아. 먹고 싶은 걸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사회에서 이걸 좋아했다. 그러면 규율부들이 그걸 싹 들어가지고 그걸 다 체크해. 그럼 개네들은 또 일요일 날 똥 퍼야 돼.

”

박정미, 안태윤, 임혜경, <경기도 기지촌여성 생활 실태 및 지원정책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0, 154쪽.

# #(시설 내부)폭력, 죽음, 사망사건

폭력, 죽음, 사망사건

박정미, <‘여자’가 ‘보호’를 만났을 때 : 요보호여자시설, 기록과 증언>, 아시아여성연구 제60권 1호, 2021, 62쪽

“

내 눈으로는 직접 못봤어요. 자고 있었으니까. 근데 반장이 "처리하고  
왔어" [라고] 옆에 있는 언니한테 [말했어요.] 근까 그 언니가 "뭘?  
죽었어?" [물었더니] 7호에서 죽었대요. (...) 우리가 9호였걸랑요. 옆에서  
"왜 죽었대?" "뭘 결핵으로 죽었대? 왜 죽었대?" "맞아서 죽었어.  
근데 치우고 왔어." 너무 기가 막힌 말 아니예요, 그게? 사람이 죽었는데  
때려서 죽었대잖아요. 맞아서. 근데 치우고 왔다고. "치우고 왔어."

”

요보호여자시설 사망사건 통계 18)

1963년 2명, 1956년 1명, 1966년 1명, 1967년 7명, 1968년 7명, 1969년 11명, 1970년 77명, 1971년 22명,  
1972년 3명, 1973년 66명. 사망 원인은 기록되지 않았으며 1974년 통계부터는 사망자 항목이 사라짐.

# 사회정화를 위해 '창녀'를 '청소'하고 '처벌'하다 : 요보호여자시설

## 요보호여자'시설'

◇선도보호를 위해 윤락여성을 비롯한 요보호여자를 시설에 무차별적으로 수용하고, 수용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음. 성매매를 하는, 성매매를 할 우려가 있는 여자들이 어째서 선도의 대상이 됐는가 질문해야 함. '선도'란 올바른 길로 이끌 뜻함. 사회가 성매매 여성을 올바른 길에 있지 않은, '불온'하고 '타락'한 여성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임.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더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깨끗한 새 직업'을 통해 '자립갱생'이 필요한 대상으로 대함.

◇요보호여자 시설에서 '보호'의 기능은 '사회의 독버섯'같은 성매매 여성을 지역사회에서 치우기 위해 '소탕'한 것으로 요보호여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

◆이런 맥락속에서 요보호여자 시설은 '사회정화'를 위해 요보호여자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갱생하기 위해 수용 및 격리의 수행을 하며 골칫거리인 성매매 여성을 사회에서 '청소'하는 시설의 역할을 함.

# 02

## 성매매 여성과 시설의 역사: 성병 관리소

**일제강점기 성병관리소  
:성병(창녀)으로부터  
가정의 기둥을 지켜라**

## 성병 관리소의 등장 19)

- ◆ 일제강점기, 화류병花柳病 유행 : 화류병이란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병은 매춘부들의 병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음
- ◆ 1908 일본 : 기생단속령, 창기단속령 발표, '창기'는 의무적으로 성병 검진을 받기 시작함. 침략 전쟁을 수행하는 일본 군대의 성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춘부 대상 성병 관리 정책 시행
- ◆ 1916 일본 :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조선에 공창 제도화 정책을 추진을 위해 전국적인 통일 법규를 도입하며 공창제가 생겨났으며 매춘부 관리가 시작됨
- ◆ 성병 관리소 : 일제가 조선의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매춘부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등장



# 군사정권 성병관리소 : 기지촌 유지와 미군의 전투력을 위하여



## 성병 관리소의 변화

- ◆1947년, 공창제 폐지령 이후 성병이 사라지지 않자 1948년에는 계속되는 성병률 증가에 따라 공창제 폐지 후 보건후생부에서 을지로 서울순화병원 3층에 국립성병환자 치료소를 설치하고 주로 매춘부에 대한 성병검진을 통해 성병보유자를 강제 수용하고 치료하기 시작 20)
- ◆정부의 재정적 문제,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부족, 약품의 부족 등으로 성병은 높은 감염률을 보임 21)
-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군 성병 감염 방지와 미군 기지촌 유지를 위해 89개소의 성병관리소중 약 43개소의 성병 관리소를 미군 부대가 집중해있는 곳에 설치했고, 성병에 감염된 기지촌 여성을 완치될 때까지 강제 수용함. 22) 1956~1957년 총성병검진횟수 약 43만~49만 건 중 경기도는 약 22만~26만 건(51~54%)에 달했음. 23)
- ◆1965-1970년까지 매년 수용자 실인원이 약 1만 명, 연인원이 약 5만 명으로, 여성 1명이 1년에 평균 5회 정도 수용됐다고 추정 가능. 이러한 성병 관리소는 1990년대 초까지 유지됨. 24)

“

그때는 거기 낙검해갓구 병원에 들어가면, 거기는, 그 ‘언덕 위에 하얀 집’은 가상이에 전부 다 사과 밭, 이런 데였었어, 그래갓구 아가씨들을 거기다 갖다가놓으면 애네들이 도망을 가기가 힘드니까, 거기 들어가면 운동장이야. 말하자면 교도소나 진배없어. (중략) ‘언덕 위에 하얀 집’ 하나 있고, 운동장은 크고, 철문 철커덕 잠그고, 곡 교도소지. 그래갓구 그 안에 들어가면 또 (건물 출입문) 철커덕 잠궤. 그러면은, 우리 나가서 좀, 바람 쐬게요, 그림 (수위가) 옥상 위로 올라가라! 그래.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었어. 거기서 인제 도망 나가다가 떨어져서 즉사해서 죽었지. (중략) 걸루 끌러가면 거기서 인제 놔주지, 주사를. 페니실린 맞고 죽는 사람도 있고, 부작용[페니실린 쇼크(penicillin shock): 페니실린 주사로 인한 심한 이상 반응. 귀울림, 호흡곤란, 발한 따위가 일어나며 죽기도 한다]이 나서, (주사를 맞고 나면) 걸음을 못 걸어. 이 다리가 끊어져나가는 것 같애. 그걸 이들에 한 번씩 맞춰줘. 그런데 그거를 맞은 사람은 다른 주사가 안 받아. 썰 썬 거라, 페니실린이. 부작용이 나서 죽지.

”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p.245~246 (미군 ‘위안부’ 김정자의 증언. 한울엠플러스, 김정자 증언, 김현선 역음, 새움터 기획)

# '창녀'를 '단속'해서 성병의 확산을 막다 :성병관리소

## 성병 관리소의 시설화

◇치료를 목적으로 윤락 여성이 성병 관리소에 수용됐다고는 하나 건강을 위해서는 아니었음.  
미군 부대의 군사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윤락 여성의 성병은 관리되어야 했으며  
이런 맥락에서 윤락 여성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집단으로 여겨졌음. 즉, 윤락 여성의 수용은  
건강이나 치료의 목적보다도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해 '병균'을 지역사회로부터 차단하고,  
격리한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국가는 윤락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기보다 성병 보유자 개개인을 병리화/범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처벌과 감금만을 유일한 해결 방법으로 삼았음. 이런 관점 속에서 성병 관리소는  
윤락 여성들에게 처벌과 (지역사회로부터의) 격리 공간의 속성을 가지며 시설화된 공간으로  
작용함.

# 03

## 정리: '성매매 여성' 대상 시설

성매매 여성 = 미관에 안 좋음, 질병의 온상, 가정이 있는 남자에게 성병 옮김, 성풍속을 해치는 주요 원인, 골칫거리, 밤거리를 더럽힘,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더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음 (깨끗한 새 직업을 줘야 함), 구제불능 집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 빈곤과 무식의 소산....

**=> 자립 갱생, 정신 계몽, 구원, 건전한 사회인, 사회 정화, 청소, 단속, 처벌 필요**

## 성병 관리소

- ◆ 일본 정부가 공창제 도입 후 매음부 관리 및 식민지 조선 지배권 장악을 위해 유곽 근처에 설치
- ◆ 한국전쟁 이후, 한국 정부가 기지촌 관리와 미군 성병 감염 방지를 위해 기지촌 근처에 다수의 성병 관리소 설치
- ◆ 성병 관리소 설치 및 유지는 성매매 여성의 건강을 우려한게 아닌 지역사회에 병균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큼. 성매매 여성이 성병에 취약한건 구조적인 문제지만, 국가는 성매매 여성을 쉽게 성병의 온상으로 낙인찍고 병리화/범죄화하는 방식을 취함.

## 요보호여자 수용시설

- ◆ 요보호여자: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
- ◆ 요보호여자 수용시설: 요보호여자를 선도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도시 기타 필요한곳에 보호지도소를 설치 -> 5.16 군사정권 이후로 시설 숫자 증가
- ◇ 수용 대상 불분명, 어떤 수용의 성격인지 알수없음, 수용 절차와 기한을 명시하지 않음
- ◇ 요보호여자 수용시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격보다 처벌, (지역사회로부터의) 격리, 감금의 성격이 강함. 실제 여러 인권침해로 인해 사망사건과 도주사건이 있었음.

# 04

## 시설화된 쉼터, 자활센터

##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체계



○근거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목적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보니] 성매매 없는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다  
 - 성매매피해상담소 ‘여성인권센터 보다’ 현상 취재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19

##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25)

○목적 :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및 심리안정 상담,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알선 등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자활지원센터는 탈업소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직업재활상담 및 직업훈련 지원과 공동작업장 등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

○종류 : 상담소, 생활시설(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개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근거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 9조 26)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㉓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시설의 종류) : 일반지원시설(쉼터),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그룹홈)

나. 시설 현황

(2023. 1월 기준 /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96	22	10	7	3	5	4	2	12	2	2	3	4	6	2	9	3
일반 지원시설	24	5	3	2	1	1	1	1	2	1	1	1	1	1	1	1	1
청소년 지원시설	14	5	2	1		1	1										3
외국인 지원시설	1							1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1	3	2	1	-	1	-	-	1	-	-	1	1	-	-	1	-
자활지원 센터	13	2	1	1	1	1	1	-	3	-	-	-	1	1	-	-	1
대안교육 위탁기관 <sup>1)</sup>	2	1															1
상담소	31	6	2	2	1	1	1	1	5	1	1	1	1	3	1	3	1

▲▶ 여성가족부, <2023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다. 시설 종류 : 법 제9조, 제15조, 제17조

구분	시설 종류	입소-이용 대상 (기본입소기간)	주요 기능	연장사유 <sup>2)</sup> 및 기간
생활 시설	일반 지원시설	일반성인 성매매피해자등 (1년)	• 숙식제공, 전문상담 • 의료·법률지원 • 사회보장 급부수령 지원 •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상담원 의견 반영 (1년 6개월)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 (19세가 될 때까지)	• 일반지원시설과 동일 • 진학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기관 취학 연계 등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 상담원 의견 반영(2년)
	외국인 대상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등 (3개월)	• 피해자 긴급보호 • 통역서비스 제공 • 전문상담, 의료·법률 지원 • 대사관 등 관계기관 연계 • 숙식제공, 귀국지원 등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 • 성매매피해자로 수사 중인 경우(사건을 불기소 처분, 공소권이 할 때까지) (연장)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발성매매 여성으로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자(2년)	• 일정기간 주거 지원 등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상담원 의견 반영(2년)
이용 시설	상담소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 긴급구조, 현장방문 상담 • 의료 및 법률문제 지원 • 지원시설 등 관련기관 연계 • 집결지 현장지원사업(15개소) 등	-
	자활 지원센터	발성매매 여성으로 자활 지원이 필요한 자 (1년)	• 발성매매 여성 자활역량 강화 • 전업준비를 위한 훈련 • 공동작업장 등 자활참여자 지원사업 • 취업 및 창업 지원 • 외부자원 활용 연계망 구축 • 취업·창업자 사후관리 등	• 자활참여 지원사업의 경우 →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기본이용기간 포함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대안교육 위탁기관 <sup>3)</sup>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	• 의무교육 및 자활교육 • 사회복음강화 훈련 지원 등	-

2) 장애인 입소자 입소기간 연장 신청(본 지원의 8면 III.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개별지침 참조)  
3)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지원시설의 부속시설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근거

## 요보호여자시설, 성병관리소와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은 분명 다르다!

○요보호여자시설 = 요보호여자 선도보호 및 수용, 정신계몽, 자립갱생 중심

○성병관리소 = (지역사회로부터) 질병차단, 군대 강병책을 위한 단속,  
성병 감소 중심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의) 피해회복, 자립, 자활 중심

# 그러나

## 자활센터: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여성가족부: 자활지원센터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지원금은 참여자 직업탐색, 기술습득, 사회적응 등을 위한 지원금으로써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 27)

○2023년 기준 최저임금 9,620원이나 자활지원센터 참여자는 8,310원의 지원금을 받음 28)

## 힘터: 시설수급자<sup>29)</sup>

○시설에서 성노동자에게 별도의 생활비 지원이 없어서 시설수급자 제도 이용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성매매피해쉼터 포함) 거주자

## 강제 70% 저축제도

○보장시설 수급자: 입소자 중 근로소득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시설에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자립적립금으로 근로소득의 월 70% 이상을 저축해야함(근로소득 산정 시 공제) 30)

○입소자 주부식비 및 피복비는 보장시설 수급자로 인정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지출 31)

라. 퇴소조치 및 이용중단(시행규칙 제9조제4항)

-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 퇴소 또는 이용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성매매·성매매알선·성매매소개 업소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자
- 입소·이용 내부규정에 따른 퇴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시설의 장은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 또는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 지원시설의 장은 퇴소·이용중단을 결정한 경우 15일 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여성가족부, <2023 여성, 아독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성매매 '피해자' 라면서 왜 이렇게 대할까?



**국가의 태도 : 성매매 방지, 피해회복, 자립, 자활**

->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위해 피해지원 시설이 만들어졌으나 이들을 '정상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교정'의 목적이 담겨있음. 즉, 국가 법체계 안에서 성매매 여성은 (범죄자 혹은 피해자이면서) '비정상인'으로 분류됨. 현재 국가의 태도는 <윤락행위 등방지법> 시절 성매매 여성을 '선도' 해야한다는 시선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 성노동자는 대부분 경제적 요인때문에 일을 하지만, 국가는 탈성매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자활센터 운영중. 9to6과 같은 '정상적인 노동시장'에 성매매 여성을 편입시키는게 유일한 해결책이라 여기고 있음. 당초 국가는 성매매 여성이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서 튕겨져 나온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이 아닌, 이들의 몸을 '교정'하는 방법을 택함.

**시설화된 쉼터, 자활센터**

**성매매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이들을 '비정상인'으로 규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가 생산되는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채  
사회적 약자 개개인의 몸을  
'교정'하는  
래도부터 바꿔야**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매매 여성은 지역사회에서  
'시설화된 삶'을  
반복해서 겪는다**

## 참고문헌

- 1), 2) 여성복지사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6370> (2023-05-31 확인)
- 3) "경기도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 창문 철망 때문에 희생 더 커", MBC 뉴스, 1995-08-21
- 4)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 조명", 한국강사신문, 2023-05-04
- 5) 강혜경, <제1공화국 시기 매춘여성과 성병관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10, 267쪽
- 6) 권은혜 외, <고아, 족보 없는 자 : 근대, 국민국가, 개인-RICH 트랜스내셔널인문학총서1>, 2014
- 7) 6과 같음
- 8) 5와 같음
- 9) 박정미, <'여자'가 '보호'를 만났을 때 : 요보호여자시설, 기록과 증언>, 아시아여성연구 제60권 1호, 2021, 47쪽-48쪽
- 10), 11) 김아람,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수용처분>, 유진, 박경규, 김아람, 김재형, 김일환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 (II) : 1970년대 보아처분제도의 형성과 부랑인 단속,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311-312쪽.
- 12) 1과 같음
- 13) 10과 같음
- 14), 15), 16) 박정미, 2021, 52쪽-53쪽
- 17) 김아람, 2020, 313-314쪽.
- 18) 박정미, 2021, 62쪽
- 19) 강혜경, 2010, 259쪽.
- 20), 21), 22) 강혜경, 2010, 263쪽, 282쪽.
- 23) 박정미,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년 - 냉전기 생명정치, 예외상태, 그리고 주권의 역설>, 한국사회학 제49집 제2호, 2015, 12쪽.

## 참고문헌

- 24) 박정미, 2015, 15쪽-16쪽.
- 25)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경기도청,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dx=1221&menuId=2986> (2023-06-01 확인)
- 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4%B1%EB%A7%A4%EB%A7%A4%EB%B0%A9%EC%A7%80%EB%B0%8F%ED%94%BC%ED%95%B4%EC%9E%90%EB%B3%B4%ED%98%B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3-06-01 확인)
- 27) 성매매피해여성자활지원센터 참여자들에게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을, 행정안전부 : 온국민소통, 소통 24, [https://sotong.go.kr/front/propseTalk/propseTalkViewPage.do?propse\\_id=ffefdeeeab92e4b11a91c8b038c968e47&miv\\_pageNo=1743&orderBy=a&propse\\_progrs\\_sttus\\_code=&propse\\_realm\\_code=&search\\_code=all&search\\_txt](https://sotong.go.kr/front/propseTalk/propseTalkViewPage.do?propse_id=ffefdeeeab92e4b11a91c8b038c968e47&miv_pageNo=1743&orderBy=a&propse_progrs_sttus_code=&propse_realm_code=&search_code=all&search_txt), 2020 (2023-06-01 확인)
- 28) 여성가족부, <2023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23, 599쪽.
- 29)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1> (2023-06-01 확인)
- 30) 여성가족부 2023, 596쪽.
- 31) 여성가족부, 2023, 597쪽.

International Waters 31  
X 성노동자건강권연구팀  
X 성노동자해방행동주홍빛연대차차



발제 2 성노동자해방행동주홍빛연대차차 해수

성노동자가 살아가는 시설사회

파주 연풍리 용주골에서 재개발을 위한 집결지 강제 폐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지역 성노동자들에게 제안된 자활 지원금의 규모와 수령 대상에 대한 논란은 잠시 제쳐두고, 이 기지촌 골목에서 ‘성노동’을 둘러싼 각축이 만들어 내는 장면들을 유심히 눈여겨볼 만하다. 당장의 생계 대안이 없는 200명 남짓의 성노동자들이 용주골 집결지에 남아 영업을 이어가는 동안, 매주 화요일에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이하 여행길)” 행사를 진행한다. 가슴팍에 “여성인권지킴이”라는 문구를 달고 여성주의를 상징하는 보라색 풍선을 든 이들은 행진 중 성노동자들이 일하고 거주하는 공간인 유리방들을 구경한다. 지난 5월 16일, 견디다 못한 용주골 성노동자들은 여행길 행진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골목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집결지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 제발 구경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려 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마주한 여행길 참여자들은 아무런 응답 없이 뒤돌아서 행진을 이어갔다. 이 가벼운 외면과 무시는 어느 ‘여성의 행복’을 증진하기보다는 새로운 모욕감만을 자아냈을 것이다.

유리창 너머의 성노동자는 멸시를 담아 구경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 서려는 성노동자는 그저 눈감고 외면해버리면 그만인 시선의 폭력, “성매매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업주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 어느 여성도 성매매를 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sup>1</sup> 실제 눈앞에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부정하는 이 기이한 태도는 성노동자를 둘러싼 자활과 구원 시도의 어떤 핵심을 보여준다. 성노동자 여성이 ‘여성’이자 ‘시민’의 자격을 가진 외부인들과 함께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마주 서기 위해서는 탈성매매를 ‘약속’하거나 스스로의 피해자성을 강조하는 등 반드시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굴종을 선언해야만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성노동자 여성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된다. 이는 차후에 다룰 성노동자의 시설 이용 경험과도 연결된다.

여행길 행진자들은 슬로건 등을 통해 집결지 성노동자들을 ‘여성과 시민’의 대척점이자 사회의 위기로 호명한다. 이는 몇 년 전에 천호동의 상인과 주민들이 천호동 집결지 폐쇄를 주장했을 때나,

차차에서 아웃리치를 나가는 서울 A동 재개발구역에서 맥주양주집을 몰아내려 할 때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태도다. A동 일대의 맥주양주집 성노동자들은 전부 중노년 여성으로,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부터 정권이 몇 번을 뒤집히는 동안 집결지, 노래방을 포함해 여러 지역과 성노동 업종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들을 뒷받침했다. 언제나 지역 사회와 한국 경제의 일부였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A동에는 맥양집 업장 앞마다 “불법 유흥



<sup>1</sup> 이승욱 기자. “성매매 집결지 폐쇄 앞둔 파주, ‘자활 지원금’ 놓고 갈등. 한겨레. 2023.05.16일자 기사에 실린 사단법인 ‘인권희망 강강술래’ 대표 강혜정의 인터뷰 내용이다.

업소 퇴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라는 캠페인 배너가 줄줄이 걸려있다. 차차는 1년간 A동 맥양집 아웃리치를 진행하면서 ‘시민’의 자격을 가진 A동 주민들이 맥양집 종사자들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상황을 계속해서 전해 들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모임을 조직해서 맥양집에 무단침입과 불시점검을 일삼았고, 보건소에 지속적으로 신고를 넣거나,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도 단속 모임을 조직했다. 그런데도 A동 맥양집 종사자들은 차차 활동가들에게 괜히 “소란을 일으켜 더 험한 꼴 당하지 않게”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종사자는 이미 미아리 텍사스를 포함해 강북구의 여러 일대가 재개발되는 동안 밀리고 밀려 A동에 도착했고, A동에서마저 밀려난다면 할 수 있는 다른 노동이 없다고 말했다.

자본주의적 구조 안에 가난한 여성들이 존재하는 한 성노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성노동자는 사회에서 제거해야 하는, 제거할 수 있는 존재이자 사회와 분리된 비-주민, 비-시민으로 여겨진다.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지원하는 시설은 교회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들부터 정부 산하기구까지로 그 형태가 다양한데, 해당 시설들은 성매매 자체의 폭력성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개개인을 ‘교정’하고 ‘구원’하고 ‘자활’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니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구원 서사는 늘 여자가 폭력적인 성산업에서 탈출해 지원자들의 품에 안전하게 안기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 결말에는 문제의 여성들이 멀쩡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으니 결국은 갱생되어 이 시설에서 정상인으로 탈바꿈한 채 떠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알팍한 구원의 환상으로 인해 쉼터와 자활센터에서의 열악한 생활 조건과 빈약한 자활 지원, 그리고 시설을 퇴소한 많은 여성이 대안적인 취업의 기회 없이 성노동으로 돌아가는 현실은 잘 이야기되지 않는다. 탈성매매에 대한 무조건적인 이상화는 자칫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한 채 성노동자들이 꾸려온 생존 전략을 가치 절하하고 도리어 노동자로서의 위치만 탈각시킬 우려가 있다.

차차는 근 3년 안에 전국의 서로 다른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시설’을 경험한 6명의 이용자와 2명의 종사자(사회복지사/여성주의 활동가), 그리고 1명의 탈가정 청소년 지원 시설 종사자를 인터뷰했다. 그중 핵심 인터뷰이 7명과의 대화가 이번 토론회 발제문에 담겼다. 특정 종교와 연관된 시설을 이용한 인터뷰이는 없었고, 이용자 인터뷰이 전원이 자신에게 탈성매매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쉼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퇴소당한 **구름**은 쉼터의 열악한 환경이 불만스러웠던 것과 별개로 “전혀 갈 데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감내하게 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뷰이 **나무**도 아프던 와중 코로나로 인해 일이 끊겨 수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쉼터에 들어갔다. 인터뷰이 **담장**은 키스방 근무 중의 성폭력 경험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다 자활센터로 연계되었고, **바람**은 청소년 시설 이용 후 성매매 여성을 위한 쉼터, 자활센터, 상담소를 모두 경험해 보았다. **바람**에게 시설에서 만난 성노동자들의 상황에 관해 묻자 “대부분 일을 해서 빚이 많이 쌓여있는 경우예요”라며, “언니들 얘기 들어보면 다 어렸을 때부터 [성노동자] 일했어요. 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좀 어렵죠”라고 답했다. 그리고 자활 노동보다 일반 아르바이트가 시급이나 노동 요건이 더 나을 때가 있음에도, “통장이 압류되거나 신용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활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종사자 인터뷰이 **하늘**은 자신이 일하는 쉼터 숙소에 업주나 사채업자 등 “수상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어느 여성의 입소를 도울 때는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치듯 짐을 옮겨야 했던 적도 있다고 했다.

여기서 용주골 집결지에 여전히 남아있는 성노동자들과 성매매 여성 지원 시설에 들어가는 이들이 각각 ‘집결지’와 ‘지원 시설’을 더 물러설 곳 없는 상황에서의 생활 터전으로 여긴다는 유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노동 업장과 쉼터, 자활센터는 모두 빈곤한 성매매 여성들이 필요에 따라 경유하는 일시적 머무름의 공간이며, 이 여성들이 각 공간의 위태로움과 그 내부에서 자신이 처한 취약한 상황을 모두 인지하면서도 상황에 맞게 선택한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큰 유사성을 가진다. ‘성산업이 여성을 억압하는 시설’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오히려 이를 더 확장해 **성노동자가 다양한 시설, 배제와 분리의 구조 사이를 전전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설 사회와 시설화의 굴레에 갇혀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발제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위한 쉼터와 자활센터라는 두 종류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성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함께 시작하고 싶다.

## 열악한 지원, 개인에 대한 책임 전가

“쉼터의 필수조건 두 가지는 성매매 안하기와 저축이에요. 저축을 안하면 시설에서 쫓겨나요. 공무원들이 실제로 주기적으로 감시하거든요.” (구름)

자활센터와 쉼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이용자에게 할당된 지원금과 지원 물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입소 기간 동안 자신의 성매매 유입 원인이기도 했던 빈곤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실정이다. 특히나 몇 인터뷰이들은 강제 저축을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다.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별도의 생계비 지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쉼터에 입소한 성매매 여성들은 일반적인 ‘보장시설 수급자’로 등록된다. 여타 복지시설에서처럼, ‘보장시설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쉼터 거주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개인 소득 중 70%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적용되고,<sup>2</sup> 이와 같은 저축 의무는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가져온다.

인터뷰이 구름은 쉼터 입소자들 “대부분이 정말 돈이 없어요”라며, 꼭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이용자들에게 피복비가 매달 주어지는데 그 금액이 고작 3만 원 혹은 7만 원꼴이라고 전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이 소액의 피복비만으로 매달 버티는 것이다. 구름은 쉼터에 머무는 동안 외부 아르바이트로 월 220만 원을 벌었는데, 매달 70%의 강제 저축금을 제하고 남은 돈 약 66만 원가량으로 살아야 했다. 구름이 머문 쉼터는 주말에

<sup>2</sup> 2023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하면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즉 쉼터나 그룹홈을 이용하는 사람은 ‘보장시설 수급자’로 인정되어야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 시설 이용비가 면제된다. 인터뷰이 바람과 구름이 말했듯이, 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성매매 여성은 대부분 돈이 없거나 빚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장시설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쉼터에 살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가뜩이나 쉼터에는 입소 대기자가 많아 퇴소당할 가능성이 높다. 종사자 인터뷰이들에 의하면 시설별로 원장의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저축금액을 감면시켜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터뷰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지낸 시설에서 70% 이상 저축하라는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서울시 ‘성매매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활동비나 성매매 집결지 조례지원 지원금 등을 받으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수급비가 삭감된다. 성매매 여성 조례지원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금 신청 대상자에서부터 배제하는 경우도 많다. 인터뷰이 한 명은 “성매매 여성의 자활은 빈곤을 유지해야만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배식을 포함해 기본적인 식재료도 거의 제공하지 않아, 최소한의 생활 지출만으로도 빠듯한 금액이었다. 그런데도 쉼터의 활동가들은 계속해서 이용자 개개인에게 돈을 더 아끼라고 압박하고, 택시를 한 번 타기만 해도 구름의 소비 습관을 나무랐다. 결국 구름은 어느 달의 저축금이 70% 미만이었던 것을 들켜 곧바로 강제 퇴소를 당했다. 이에 더불어 구름은 지원금이 모자란 상황에서 쓸데없는 지원 물품에 예산이 사용되는 실태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나 쉼터 종사자들이 성매매를 규탄하면서도 이용자를 위한 지원 물품으로는 대부분 토너 크림, 입술 플럼퍼 등 꾸밈을 위한 화장품을 지급해 기묘한 모순을 느꼈다는 것이다.

성노동자 여성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받을 수 있는 자활 지원 금액이 총 760만 원인데, 자활센터를 1년간 이용한 후 기간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최대 3년간 센터에서 지내면서 총 1,00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인터뷰이 바람은 그 돈으로 취업을 위한 외부 교육도 신청하고, 법률 및 의료지원까지 전부 해결해야 했다면서, “사실 법률 지원만 받아도 전부 날아갈 금액이죠”라고 허심탄회하게 덧붙였다.<sup>3</sup> 앞서 언급했듯 빛과 고리대금에 허덕이거나 신용 불량이 된 여성들이 주로 자활센터에 입소하는데, 이들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기에는 터무니없게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센터 단위에서 자의적으로 최저 임금을 맞춰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활 근로는 일반 노동이 아닌 일종의 훈련 과정으로 여겨져 최저 임금보다 낮은 8,310원의 시간당 지원금이 책정되는 데다 성노동자 지원 시설에서는 최소 100시간, 최대 150시간을 일할 수 있어 한 달에 83만~127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 구름과 같이, 인터뷰이 바람과 담장 또한 활동가들이 입소자들의 이런 열악한 경제 상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금전 감각 기르는 것을 강조하면서 소비 내역을 검열하고 개인을 단속하려 드는 점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인터뷰이 담장은 자활센터에서 이 적은 임금마저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가 이용한 센터에서는 센터가 지원하지 않는 분야에서 개인이 배우고 업으로 삼고 싶은 것이 있어도 당장의 취업과 연관되어 있음을 증명해야만 교육비를 사용할 수 있고, 가까스로 지원을 받아 학원을 가더라도 외부 교육을 받는 시간이 공식적인 자활 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아 그 시간의 교육비는 제한 채로 자활 시급을 지급받았다. 그럼, 월급을 전부 받기 위해서는 시설 내에서의 자활 교육 시간을 따로 채워야 했다. 게다가 센터 직원들이 시설 이용자들의 지각 습관을 고치고 재사회화를 시킨다는 명분으로, 자활센터 교육 시간이 9시부터라면 9시 10분에만 도착해도 9시대 한 시간의 시급을 엄격하게 제했기에, 담장에게는 시설 외부로 나갔다 오는 기회비용이 너무 높았다.

<sup>3</sup> 시설 종사자 하늘은 시설의 필수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비판하며, “이거를 공통적인 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거 아닌가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쉼터에서 자활을 할 때 프로그램 연수비라던지 자격증 공부를 하는 건 개인에게 할당되는 지원금 760만 원으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간혹 기관들이 개인 이용자의 지원금 760만 원에서 외부 교육비를 지출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문제제기했었죠. 그거는 안 돼요. 자활센터 거주 및 의료 지원, 법률 지원이 포함되는 760만 원인데. 안 그래도 금액이 변하지 않고, 10년 20년 동안 760만 원으로 굳어져있어서 말이 많은데. [거기서 교육비까지 내면 안되죠]”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바람의 발화에서 드러나듯, 해당 발제를 위해 만난 시설 이용자 인터뷰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외부 교육에까지 개인 지원금 760만 원을 쓴 모양이었다.



쉼터와 자활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자체도 마찬가지로 부족함이 많았다. 담장은 자활센터에서의 교육이 “유의미하지 못했고, 최소 생계비만 간신히 버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이용한 자활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이 미용과 네일 분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사무직 취업을 위해 학원을 등록하고 싶었지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자활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일상생활 영위가 불가능해 결국 포기해야 했다. 그런데 자활센터 내에서 이러한 여성화된 저임금, 저숙련 노동 교육 이수를 완료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재취업이 어렵다. 다른 교육, 문화, 관계의 자본 없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진입 장벽이 있을뿐더러, 쉼터 및 자활센터에 머문 1~3년의 시간을 경력으로 명시할 수 없어 시설에서 기술을 배워도 입소 기간이 경력 공백으로 남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뷰이 구름도 자신이 이용한 시설에서 모든 이용자가 주중 쉼터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했으며, 일년 이상 똑같은 자활 프로그램이 반복되어 장기 이용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은 퍼스널 컬러 진단, 요리, 보드게임을 하면서 입소자들끼리 친해지도록 하는 세션과, 네일, 미용 등 여성화된 저임금 노동 교육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실질적인 생계 지원과 노동 교육은 미비한 데에 비해, 성매매에 대한 사상 교육과 당위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 또한 인터뷰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문제였다. 담장은 자활센터에서 “성매매 경험 재인식 수업”을 진행했다고 하며, 수업 내용이 반성매매 진영에서 주장하는 유흥업소 종업원 법률 조항 삭제, 노르딕 담론, 그리고 “성노동론은 포주와 성구매자의 의견”이라는 주장만을 담았다고 전했다. 담장이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성노동자’라 이야기했을 때, 담장에게 “네가 성매매하다가 성폭행을 당해놓고 어떻게 자기 경험을 노동이라고 할 수 있냐”는 맹렬한 비난과 끈질긴 지적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 이후부터 활동가들 여럿이 담장에게 성매매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고 구매자는 대부분 남성이니 성매매는 여성 착취 폭력일 뿐이라며 매일같이 훈계했고, 담장은 그 경험이 자신을 가장 지치게 하는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많은 시설 종사자가 ‘자립’ 서사나 여성화된 노동, 경제적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없이 이용자의 복잡한 경험을 성폭력으로 압축해 함구시켜 버리는 것이다. 심지어 담장의 경우, 당사자의 성폭력 경험이 반성매매 기조를 주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에 더욱 문제적이다.

한편 구름, 담장, 바람 모두 쉼터와 자활센터에서 이용자의 법적 권리와 세세한 지원 제도에 대한 교육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끔은 활동가들을 거듭해서 독촉하지 않으면 법적 지원이 더 진행되지 않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이처럼 성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피상적인데다 까다로운 규칙과 제약 때문에 성노동자가 자신에게 더 유용한 교육을 받거나 일정한 예산 안에서 자신의 살림을 꾸려보는 등 실질적으로 시설 이후의 삶을 위한 준비를 하기가 어렵고, 시설 이용자들이 사회경제적 계층성 때문에 성노동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쉼터와 자활센터에서는 그들의 회복을 구조보다는 개인의 태도와 노력 문제로 전가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걸맞게 노동하고 생활하는 근면하고 순종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자활 지원이 미비한 부분을 메우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성노동자들을 다른 여성화된 불안정, 저임금(, 고강도) 노동 현장에 재배치시키는 것이 과연 사회로의 복귀고 자활일 수 있을까? 이 와중에 시설에서의 통제와 징벌적 운영도 성노동자의 자활이랄 것을 배로 힘들게 한다. 인터뷰이 바람의 발화로 시작해, 다음으로는 시설 내의 수직적 관계와 성노동자들에 대한 대우에 더 주목해 보려 한다.

“왜 내 자활 과정에서 나를 배제시키려고 하지? 자기결정권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교육을 잘 못받았지만 제가 봐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게 안 느껴지나? 우리는 무조건 약자여야 했나? 아니면 공부를 제대로 못 했고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대해져야 했나? 우리도 충분히 설명 해주고 알려주면 누구보다 잘할 텐데 ...” (바람)

## 시설 내의 관계와 각축

“우리는 무조건 약자였어야 했나?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대해져야 했나?”라는 바람의 질문은 시설 내에서의 다양한 관계와 갈등의 핵심을 꿰다. 시설 이용자들을 인터뷰하면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감상은 시설 종사자들 상당수가 이용자를 대책 없는 아랫사람 취급한다는 것이었다. 동급의 인간으로 보지 않고, 수용시설이나 군시설처럼 수직적인 통제와 품평, 단속,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sup>4</sup>

당황스럽게도, 여성주의 활동가를 포함한 여러 시설 종사자가 성매매 산업 속 여성 대상화와 신체 착취를 지적하면서도 막상 이용자들의 외모 지적과 모욕적 훈계를 일삼는 것이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인터뷰이 나무는 활동가들이 서로 화장한 모습을 보고 “너 첫 출근한 아가씨 같아”라고 하며 깔깔 웃거나, 이용자를 보고 “사이즈 보니 오래 일은 못하겠는데?”라고 발언하는 모습을 보고 모멸감을 느꼈다고 했다. 게다가 자활센터의 ‘출근 약속’에 옷차림에 대한 규정이 적혀있었고, 상근활동가들이 너무 추레하게 다니지 말라며 이용자들의 의복과 꾸밈 상태를 지적하곤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이 구름은 쉼터 원장이 이용자들을 향해 “왜 이렇게 배가 나왔냐 살 빠라” 등 외모 품평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여러 활동가가 어느 입소자의 타투와 피어싱에 대해 매일같이 지적했으며 심지어는 타투를 하나 더하면 쉼터 이용 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심사를 할 때 떨어뜨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 외에도 이용자들의 외모 품평을 하며 밉보이지 않아야만 쉼터의 “다음 단계”인 그룹홈에 보내준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시설 종사자들이 이용자들을 동급의 인간으로 보지 않는 태도는 사방에서 드러난다. 두 명의 인터뷰이가 쉼터 ‘선생님’(종사자)들이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반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반말을 사용하는 업종에 익숙해져, 존댓말을 어색하게 느낄 것이라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종사자들만 이용자들에게 반말을 하고, 이용자들은 ‘선생님’들에게 존댓말을 한다는 모순이 있었다. 인터뷰이 구름은 입소 3개월 차에 결국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다른 종사자들은 구름에게만 존댓말을 하고 다른 이용자들에게는 여전히 반말을 하는 방식으로 반응했고, 원장은 끝까지 반말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인터뷰이들은 시설 종사자가 외출하는 성인 이용자들에게 “애인 만날 거면 콘돔 끼고 해라”는 잔소리를 거듭하거나, 이용자들 간의 따돌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20대 여자들은 원래 많이 싸워”라며 방관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sup>4</sup> 인터뷰이 바람은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면서 크게 도움이 되었고 감사한 분들도 있었다고 강조했으며, 계속해서 시설이 어떤 여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책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바람과 종사자 인터뷰이들이 모두 언급했듯, 시설마다 개개인 활동가/복지사의 역량과 가치관에 따라 성노동자 이용자들의 처우가 너무 달라진다는 것이 문제다. 이 글에서는 모든 시설과 종사자를 규탄한다기보다는 성노동자 지원 시설 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경향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임을 염두에 두길 요청한다.

비슷한 문제로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가 잘 안된 사례도 많았다. 이용자 구름은 쉼터 ‘선생님’들이 이용자와의 카톡 전문을 원장에게 엑셀로 보고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았을 때를 쉼터 이용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으로 꼽았다. 보고 내용에는 이용자가 담당 활동가를 믿고 털어놓은 사적인 정보와 농담도 섞여 있었고 심지어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개인 트위터 글 캡처도 포함되었다. 이뿐 아니라 구름과 담장은 모두 산부인과 검진 후 자신보다 상담사와 활동가들이 자신의 검진 결과를 먼저 따로 보고받아 당황한 적이 있었다. 인터뷰이 바람은 시설 입소 당시 산부인과 필수 검사를 받았을 때와 후에 의료 지원을 받으러 갔을 때 시설 종사자가 큰 소리로 자신의 실명을 부른다거나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개인정보와 검진 내역을 조심성 없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와중에 한국의 여타 시설과 같이 쉼터와 자활센터도 엄격한 생활 규칙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집단생활에 있어 어느 정도의 규칙은 필요하지만, 과한 통제가 문제다. 구름이 머무는 쉼터에서는 일주일에 딱 하루 외박이 가능했는데, 구름은 입소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다녀오면 자신의 동선 전부를 꼼꼼하게 보고해야 해 감시받는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답답한 나머지 구름은 한 번씩 무단 외출을 감행했는데, 무단 외출을 한 번 할 때마다 일주일 외박 금지령이 내려졌고, 그 상태로 또 무단 외출을 하면 외박 금지가 일주일 연장되었다. 이때는 외출도 금지되어 가까운 편의점도 갈 수 없었는데 상담사들이 대신 생활필수품을 구매해 주는 것도 아니어서 구름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건 대리구매를 부탁해야 했다. 한편 무단 외출을 포함해 시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점이 매겨졌는데, 벌점이 많아지면 퇴소당하는 수순이 아니라 벌점이 쌓인 즉시 삭감을 위해 한여름에 숙소 인근의 잡초를 뽑거나 공기청정기 필터를 모두 청소하거나 쉼터 건물 전체, 계단 전체를 혼자 청소해야 하는 식이었다. 구름은 이와 같은 “벌점 상쇄 명분의 일 시키기”가 부당하다며, 특히나 아픈 사람에게도 벌점이 생긴 당일에 예외 없이 이런 힘든 잡무를 시키는 것을 보았을 때는 혀를 내둘렀다고 했다. 입소자를 징벌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용이할 수도 있고, 입소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규칙과 책임을 ‘훈육’한다는 명분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비교적 출근이 유연하고 불규칙한 성노동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시설에 입소했을 때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처럼 처벌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들을 소진되고 주눅 들게 할 뿐이다.

여러 시설 종사자가 이용자를 자신의 삶의 맥락과 욕망이 있는 동등한 행위자로서 존중하지 못하는 실태는 인터뷰이들의 기본적인 소통 경험에서도 드러난다. 구름은 쉼터에서 매주 자치 회의가 있었지만,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기본 반찬 변경과 같은 간단한 요청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게다가 구름은 쉼터에서의 상담이 매번 “지난 상담 이후로 나아지고 달라진 점,” “멘토링을 통해 얻은 효능감” 등 정해진 답 위주로 말해야 끝이 나서, 상담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성과 보고를 위한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시간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담장은 앞서 언급했듯 ‘성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후부터 담당 상담사와 활동가들이 매번 성매매는 노동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상담 내용이 납작해지는 느낌이었고,” 피해 경험만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꼈으며, 성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건 당신에게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라는 요구가 반복되었다고 했다. 게다가 시설 종사자들이 집결지나 룸과 같이 오래된 업종 외에는 성매매의 분류와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 경험을 설명하려면 업종에 대해 많은 정보를 반복해서 전달해야 했던 것이 상당히 피로했다고

말했다. 몇 인터뷰이들이 시설에 “생각보다 다양한” 나이대의 성노동자들이 모인다고 설명했는데, 근무 기간, 장소, 업종에 따라 당사자의 경험이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필수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매매를 하나로 통치고 이제는 폭력을 치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된 나머지, 오히려 그때 활동가와 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멀다는 것을 실감한 이용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자기 서사를 전면 부인하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도움은 어디까지일까? 담장의 말 중 “무조건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신병이 더 심화될 때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라는 말이 와닿았다. 성매매 자체를 폭력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현장 내부에서 복잡하게 뒤섞여 발생하는 착취와 폭력, 주체성의 맥락들을 통합적으로 읽기 힘들어진다. 게다가 누군가가 그저 이용당하거나 착취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에 유의미한 부분이 없다는 선언은 그 목적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한 사람이 나름의 방식으로 지켜오던 삶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 피해자화는 소수자 서사에서 흔히 재생산되어 온 문법이지만, 성노동자의 경우 피해자 서사를 벗어나 일말의 생존력과 무던함을 드러내더라도 하는 순간 문란하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낙인찍힌다는 점에서 한층 더 상황이 복잡하다. 그리고 이 단순하고 엄격한 단죄가 성노동자를 지원하는 시설에서도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성노동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부정하거나 견딜 만한 투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일 수 있고, 그 판단이 그저 정당화가 아니라 진심이고 진실일 수 있다는 점을 견지해야 한다.

이처럼 시설이 징벌적 통치로 성노동자 이용자들을 간편하게 관리하려 들뿐, 평등한 소통과 문제 제기가 어려운 공간이다 보니 안타깝게도 가장 절박하고 달리 갈 곳이 없는, 말 그대로 ‘피해자’인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성노동자들이 쉼터와 지원센터를 차마 “견디지 못하고” 벗어난다.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간의 갈등에 대해 인터뷰이 바람은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센터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여기도 구인난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종사자를] 자를 수가 없다, 싫으면 당신이 나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이 싫으면 종이 나가라’ 이거죠. (중략) 성매매하면 퇴소당한다고 경고하지만, 오히려 퇴소 안 시키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실적이니까요. 암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도 오히려 나간다고 하면 잡으세요. 그래서 더 싫은 거예요.” (바람)

쉼터에서 지원 물품으로 화장품을 지급하거나, 자활센터 및 연계된 상담소에서 짜인 각본 같은 응답을 요구했다는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매매 여성’을 위한 지원책이 관료제화된 복지체계의 보편적인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자들이 교화의 대상일 뿐 아니라 ‘실적’이자 ‘성과’로서 위치 지어진다는 점이다. 인터뷰이 바람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인이 쉼터 퇴소 후 성노동을 재개하자 시설에서 지원받은 돈을 다 갚아내라는 활동가들의 압박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열악한 지원 체계로 인해 시설마다 종사자들의 재량과 시설의 자체적 예산 규모에 따라 입소한 이용자들의 삶의 처지가 과도하게 달라질 뿐 아니라, 이용자와 종사자가 상호적으로 소진되다 보니 구조와 현상을 향해야 하는 분노가 전부 ‘실패한’ 이용자 개인에게 투영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다. 그런다고 해서 무언도 나아질 수 없고, 단지 한 명의 여자가 더 힘들어질 뿐이라는 것은 시설의 활동가 본인들도 알았을 것이다. 그들도 같은

시설의 곤궁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성매매 여성 지원 시설의 핵심적인 문제는 모자란 지원과 자원을 가지고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공간에 켜켜이 쌓인 실패와 빈곤의 역사, 그리고 거기에 함께 고여있으면서 파생된 무력감과 고갈되는 감각일지도 모른다.

## 성노동자의 시설화된 삶

사회적 약자를 물리적, 관계적으로 고립시키고 특정 ‘시설’에 밀어 넣는 현상은 성매매 여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입소자를 비정상적인, 무능한 사람 취급하면서 개개인의 복잡한 상황이나 특성보다는 시설 내부의 지침과 운영자들의 생각에 따라 위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장애인, 난민, 홈리스 등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 시설들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특히 장애 인권 운동 진영에서는 오래도록 탈시설 운동을 통해 ‘시설’과 ‘지역 사회’의 이분법을 질문하고, 탈시설이 단지 시설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규범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특정 인구를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 규정해 사회와 분리하고,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제한해 무력하게 만드는 현상이 시설의 핵심적인 문제라면, ‘시설화’는 사실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주골 집결지 여성들과 A동 맥양집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공권력과 시민들의 단속과 괴롭힘, 윤리적 단죄로 생활을 방해받고 움츠러들고 있듯이 말이다.

이쯤에서 시설 종사자들의 경험을 보태고 싶다. 이용자들이 시설에 대해 불만을 느낀 만큼이나 시설에서 오래도록 버티고 문제를 제기해 온 일부 활동가들과 사회복지사들이야말로 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점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특히 인터뷰이로 참여한 종사자 하늘과 풀숲은 시설별, 담당자별로 이용자들의 경험 편차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나, 성노동자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하지 못하고 시설로 반복해서 돌아오게 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성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교차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며,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여성 전용이 아닌 시설들에서 배제당해 더욱 취약해지는 방식을 설명했다.

하늘은 ‘성공적으로’ 자립했던 쉼터 이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시설에 사는 내내 쉼터 근무자들과 두루 잘 지냈고, 2년 동안 저금으로 목돈을 마련해 쉼터의 ‘기적’으로 불릴 정도였다. 하지만 쉼터 밖의 사회는 장애가 있는 빈민 여성이 홀로 살아가기에 쉽지 않았고, 퇴소 직후 고립된 그녀는 낯선 이들에게 순식간에 돈을 다 잃어 시설에 재입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이야기는 사회로의 ‘복귀’할 것이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자립’의 영역이 아니라 꾸준한 의존과 돌봄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만 가까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늘은 그녀가 돌아왔을 때 쉼터 활동가들의 마음이 참담했지만, 그녀가 법적으로 정해진 쉼터 이용 기간을 이미 모두 채웠기에 재입소는 시켜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신, 활동가들은 그녀를 장애인 쉼터라든가 연결해 주려 했는데, 장애인 쉼터 쪽에서는 성매매 여성이 “우리 애들 물 흐린다”면서 단칼에 입소를 거부하는 바람에 시설 간의 불화가 생기고 말았다. 하지만 하늘은 성매매 여성 지원은 여성가족부, 장애인 지원은 보건복지부로 담당이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성노동자를 공동으로 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담당자들의 인식이 신경 쓰여 더 밀어붙일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여성, 젠더 문제만 여가부 소속이고 사회복지, 장애인 문제랑 소관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연결이 잘 안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좀 받아달라고 얘기하고 간담회를 통해 관계를 맺으려고 어떻게든 해봐도 그쪽에선 ‘우리는 안 받아 주는 거 아니다’라고만 말하고, 근데도 실질적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하면 다 불발됐어요. 시설마다 돌려치기 되는 거예요. 장애가 있고, 성매매 여성이고, 거기다 이제 약간 지적 장애까지 있게 되면 정말 다들 ‘책임 소재가 어딘데?’ [하고 서로 미루는 거죠]. 성매매가 더 심각한 걸로 받아들여지는 건지 우리쪽에서 장애인 단체나 시설로 연결하는 건 되게 안 되고. 반대로 장애인 시설에서는 ‘아이 친구가 성매매를 했더라고요, 조건 만남을 했어요’ 이러면서 곧바로 우리한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 시설에서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 별로 교육이 안 되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나마 우리 시설이 훈련된 게 없잖아 있으니까 우리가 상담해야지 [어쨌든냐는 마음으로] 받으면 그때부터 완전 다 우리한테 넘기는 거예요. 장애인 쉼터고 시설이고 다 성매매 여성은 잘 안 받아 주고, 성매매 여성 지원 기관에서 연락해도 대부분 거절해요. [성매매랑] 일말의 연결 지점이라도 있으면 다 우리한테 넘기려고 하고.”

이처럼 복지 체제상 단일 의제 별로 담당 기관이 분리 되어있고 장애인의 성적 권리와 관련된 제도적, 인식적인 기반이 아직 빈약하다보니 장애가 있는 성노동자 여성들을 적절하게 지원하기가 어려워진다. 게다가 하늘은 타 시설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거부하는 데엔 단체 생활에 있어 “통제하기 어려운” 여성들이라고 생각해 피하려는 마음도 섞여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로, 인터뷰이 풀숲도 자신이 지원하던 여성을 위해 급하게 일시 쉼터를 찾아야했을 때 성매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소를 거부당해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했다. “어린아이들도 같이 있는 공간이어서, 화장실이 특히 문제가 된다”는 얼토당토 않은 명분이었다. 한국의 시설 시스템이 정상성에서 탈각된 여러 인구를 ‘일반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감추지만, 시설 간의 네트워크에서도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오염된 존재들처럼 여겨지며 유독 고립되어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편 인터뷰이 잔디는 탈가정, 위기 청소년 지원 기관에서 일해본 사회복지사다. 그는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가정 및 또래 관계의 ‘보호 체계’나 적절한 자원이 없는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잔디는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는 성매매를 하다가 들켰다고 해서 이용자를 퇴출하지는 않지만, 청소년을 지원하는 여타 쉼터 및 센터에서 성매매 경험 청소년을 퇴소시킨 사례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는 복지 체계를 근간으로 취약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쉼터나 여타 시설이 성매매 경험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것 같다는 문제의식을 오래도록 느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설 이용자 인터뷰이 중 두 명이 자신이 청소년 시절부터 조건만남을 했다고 말했으며, 그중 바람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쉼터도 이용했었다. 청소년과 장애인과 성노동자가 마치 상호배타적인 카테고리처럼 존재하고, 똑같이 가난한 성매매 여성이 청소년 때는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이었다가 20대가 되자마자 자신에게 모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치부되어 처벌 가능해지는 전환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개인의 삶에서는 이러한 상태와 사태들이 연속적으로 경험됨에도 불구하고, 현 복지 체계에서는 통합적으로 지원을 받기가 어렵고 늘 사각지대가 생긴다. 그래서 성노동자들은 빈곤한 여성으로서 다양한 시설을 전전하며 살게 된다.

재차 강조하자면, ‘탈시설’이라고 해서 쉼터나 자활센터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시설들은 갈 곳 없는 성노동자들이 당장 손 벌릴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단, 시설에서의 삶이 개인을 움츠러들게 하고, 시설 바깥에서의 삶을 위한 실질적인 자원과 역량을 거의 길러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인터뷰이들에게 성매매 여성 지원 시설에 무슨 변화가 생기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인터뷰이 나무는 그저 “이용자를 수직적으로 대하고 감시하지 말고, 동등하게, 인간답게만 대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다. 답장은 “성매매에 대한 사상 검열을 안 하고, [종사자들이]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이는 대신” 여성들의 경험을 다채롭게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바람은 쉼터와 자활센터에서 막상 필요한 권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인권 및 법적 권리, 시위를 포함한 정치 참여 방법, 그리고 시설에서 지원금을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교육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성경험을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활동가들의 온도 차가 극심하다며, 시설 입소자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시설 내에서의 인간다운 대우가 시급한 일이지만, 인터뷰이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나 바라는 것이 없다는 점은 그만큼이나 한국의 성노동자가 기본적인 존중조차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드러낸다. 결국 성노동자의 탈시설을 위해서는 성노동자를 둘러싼 강한 혐오와 당위, 소모적인 편 가르기를 해체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실제 복잡다단한 경험을 진심으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해당 토론회의 참여자들이 이러한 노력에 동행해 주기를 요청하며 발제를 마친다.

International Waters 31  
X 성노동자건강권연구팀  
X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토론 성노동자건강권연구팀 도균

성노동자의 탈시설화를 위한 소고



우선 두 분의 발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여름님의 발제에서는 성병진료소와 직업보도시설이 성매매 여성들을 국가의 이해관계를 위해 관리, 통제하는 시설로 작동해온 과정을 짚 훑어주셔서 전체적인 역사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료라는 명목상의 목적과 달리 미군 부대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의 몸을 강제 수용한 성병 관리소의 시설화 문제, 요보호여성 시설의 시대적 변천 과정과 운영 실태를 정리해주신 부분 좋았구요. 군사 정권 시기에 성매매 여성을 수용했던 시설들과 지금의 성매매 여성 지원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다른지와 함께 시설화라는 맥락에서의 연결지점을 언급해주신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수님의 발제에서는 열악한 지원과 책임 전가, 시설 내의 권력관계와 통제, 평가에 대한 지점들을 잘 정리해주셔서 좋았구요. 성노동자, 장애인, 청소년이 상호배타적인 인구로 나뉘어져 복지의 대상이 되는 것의 문제, 시설화되는 삶에 대한 부분 짚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서로 다른 카테고리 인구화 되는 과정에서 성매매 지원 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적합한 몸으로 인식되었던 사람이 장애인 시설에서는 부적절하고 분위기를 흐리는 몸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시설화의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탈시설 운동을 성노동자 권리 운동의 관점에서 확장 시키고자 열게 된 첫 공론장이니만큼 고민과 문제의식을 덧대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토론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준비 과정이 제가 탈시설 운동과 담론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인데요. IL과 젠더 포럼 같은 담론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찾아 듣고 고민하거나, IW31 활동을 하는 동료들의 활동을 찾아 들었던 적은 있었지만, 제가 그 담론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단지 성노동 운동과 트랜스 운동의 자원으로 삼으려고 하기만 해왔다는 점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노동자 건강권 연구팀에서 처음 같이 읽은 텍스트가 형제복지원을 다룬 절멸과 갱생 사이였는데요. 해당 텍스트 내에서 요보호여성 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정신을 차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신없이 눈앞에 놓인 것들에만 집중하다 보니, 뒤늦게서야 각자가 생각하는 탈시설은 무엇인지, 성노동 운동의 맥락에서 탈시설을 이야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시간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를 포함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탈시설의 의미가 꽤 다르다고 생각하는 지점도 있는데요. 새로운 공론장을 열어가는 첫 시도라고 생각해주시고, 발제자와 토론자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보다는 각자의 고민이 오가고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공론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탈시설 운동은 강제된 관계와 강제된 장소를 질문하는 운동이라는 말이 무척 인상 깊어서, 토론자로서 성노동자들에게 강제된 장소, 성노동자들을 강제하는 장소, 사회적 관계의 부재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해수님의 발제에서도 드러나지만, 지금의 지원 시설이 제공하는 지원 자체가 충분하지 않고, 내부의 위계나 통제 등으로 지원하는 이와 지원받는 이의 역량이 증진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이 한계 상황에 있는 성노동자들을 위한 마지막 자원처럼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했는데요. 저는 성노동자에게 강제된 장소로서 성산업과 지원 시설, 그리고 성노동자들을 강제하는 전체 사회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토론문에서는 성노동자들이 시설 사회와 시설화의 굴레에 갇혀있다는 해수님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특히 성산업과 지원 시설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게끔 만드는 전체 사회의 통치 체계와 생산 체계의 문제, 전체 사회의 체계 내에서 상호작용하며 존재하지만 동떨어진 무언가로만 상상되는 시설화된 성산업, 시설화된 성산업과 시설화된 지원 시설 사이에서 범죄자와 피해자 중 하나가 되도록 강요되는 성노동자들의 딜레마, 결과적으로 동료 시민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성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시설사회를 읽으면서 탈시설 운동은 미혼모, 탈가정 청소년, 홈리스, 장애인, 비국민<sup>5)</sup>, HIV/AIDS 감염인, 그리고 성노동자의 문제지만, 동시에 그런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설을 경유하거나 혹은 시설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규정되는 사람들이 각각의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할 수 있고, 그 점이 매우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인간의 삶을 미끄러트리고, 마땅한 각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구조적인 힘은 단순히 특정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해있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구조가 한편으로 성노동자를 성산업으로 향하게끔 하는 사회적인 힘과 닮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 트랜스젠더, 비국민 등 사회 평균에 비해 성노동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집단들이 존재하지만, 계급, 섹슈얼리티, 젠더, 인종, 의료, 법, 제도 등 수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가운데 성산업으로 향하게끔 하는 힘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저는 전체 사회의 통치 체계와 생산 체계가 이러한 구조에 어떻게 연루되어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비국민을 인종, 국적, 계급, 젠더 등에 따라 특정한 목적으로 선별하는 비자 제도가 한국 내에 살고 있는 비국민으로 하여금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통제하고, 그 통제를 위반하는 순간 한 인간의 존재를 불법화하고 구금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국가가 통치 체계와 생산 체계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일입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기지촌 성산업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거나 기생관광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했던 과정,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재개발 자본의 경제 논

5) 활동가 에밀리님이 성노동 + 약물 이슈 연구모임에서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표현에 대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미등록비국민도 이주민인가 싶고 얼마나 더 살아야 이주민이 아니게 될까 싶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 들게 하는 용어인 것 같아요. 비국민=이주민 같은 공식 깨고 싶기도 해서요."라고 말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해주었다. '미등록 비국민'이라는 표현에 착안해, '비국민'이라고 쓰고자 한다. 국경을 넘지 않는 이주의 맥락 등 여러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최소한 본 토론문에서와 같은 맥락이라면 '비국민'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겠다는 생각으로 토론문 작성에서 '비국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들을 밀어내고 구금해온 역사, 가부장적 생산 체계를 보조하기 위해 유흥 산업을 통한 접대 문화가 유지되지만, 정치적 필요에 의해 다시 단속이 이루어지는 지금의 총체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성산업이 전체 사회의 통치 체계, 생산 체계와 무관한 특수하고 사회병리적인 공간으로만 여겨지고, 성노동자들이 처벌 또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의 대상으로만 여겨질 때, 저는 성산업 자체가 시설화<sup>6)</sup>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일터는 그 자체로 시설화되기도 합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 팀원인 림보님이 일터의 시설화를 일터를 통해 사회가 우리를 훈육하는 것으로 설명하셨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사회는 일터를 통해 일하는 이의 몸과 삶을 길들입니다. 때로 그 길들임은 자발적 수용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규칙에 따르지 않는 몸을 추방하는 힘과 그렇게 추방된 이들을 미끄러트리는 구조가 있을 때, 자발적 수용을 강제하는 사회적인 힘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제에 따르는 몸을 만들고 체제 내로 포섭하거나 쫓아내는 과정으로 시설화를 사유할 때, 학교, 일터, 병원 등 살면서 거쳐온 무수한 공간들에 작동하고 있는 시설화의 맥락을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이야기가 새서 다시 요약하자면 성산업 외부적으로는 성산업을 전체 사회와 동떨어진 특수하고 병리적인 공간으로 격리하는 힘이 작동하고, 성산업 내부적으로는 일터로서 성산업의 시설화가 함께 작동하고 있는 셈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외부적으로 성노동자를 처벌하는 법과 성노동자에 대한 도덕적 낙인으로 인해 다른 산업과 성산업 사이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경계가 존재합니다. 동시에 성산업 내부적으로는 성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수요의 차이, 후기 사이트 등을 통해서 성산업에 부합하는 몸이 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의 형태로 성노동자의 몸과 삶이 규율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

6) 이 토론문에서 시설화라는 개념은 [장애인노동권 연속좌담회 장애인노동과 노동의 전환 발표집] 중 <2강 장애인노동 경험에서 드러난 노동의 현재> 토론1. 시설사회가 원하는 노동자의 몸(림보)에서 “말 잘 듣는 노동자”의 조건을 구성하며 노동자가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규율체계를 갖춘 일터는 시설화된 공간일 수 있다.” (43쪽), “임금노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정상적이고 일할 수 있는 몸’이 되라는 일터의 규율은 감옥, 정신병원, 온갖 쉼터와 보호소 등 수용시설의 규칙과도 유사하다.”, “당장의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하는 사회에서 정상성은 생산성을 확보한 몸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 일터에 맞는 몸이란, ‘통제 가능한 몸’, 관리하기 쉽고 다루기 쉬운 몸이다.” (44쪽), [시설사회] 중 <도시의 감금회로망적 상상 : 유흥하는 수용시설의 경계와 그 사이의 몸들을 언어화하기 위하여>에서 시설을 물질적 경계, 사회적 경계, 물질-사회적 경계를 가진 공간으로 설명하고 시설의 경계가 수행적 성격을 띠므로써 특정한 수행의 반복을 장려하고 이에 기반한 리듬을 만들어낸다는 문제의식, “오히려 이때의 회로망은 수용시설을 도시의 인프라적 차원에서 다층적인 형태의 담론과 수행, 물질적 구조, 지역 조직, 노동시장 등과 역동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시설이 재생산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상상의 전환은 수용시설을 사회나 도시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계 ‘밖’의 것으로 보는 소극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의 시설을 도시의 인프라와 사회체, 담론들, 몸들, 또 다른 시설들이 이동하며 교차하는 적극적인 결절점으로 바라볼 것을 촉구한다.” (95쪽), “이처럼 특정한 인구조로 명명할 수 없는 몸을 지속적으로 재단하는 과정은 법과 담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속에서 몸들을 ‘시설에서 시설로’ 이동하게 만든다.” (105쪽) 와 같은 발상과 문장들에 기대고 있다. 몸과 삶을 훈육하고 통제하는 시설화된 공간으로써의 일터를 사유할 때, 시설화된 성산업과 시설화된 지원 시설을 전체 사회의 통치 체계와 생산 체계, 담론들, 몸들이 이동하며 교차하는 결절점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결절점 사이를 오가도록 위치 지어지는 성노동자의 상황과 그 과정에서 성노동자와 동료 하기에 실패하는 사회, 더불어 그 과정에서 이 모든 문제가 전체 사회의 통치 체계와 생산 체계의 이해관계가 적극적으로 개입된 결과라는 사실이 은폐되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틈아보기 위해 시설화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와 같은 격리와 통제를 시설화로 사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저는 성노동 운동이 성산업에 대한 낙인과 처벌에 주목하는 것만큼이나 성산업의 시설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성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성노동이 단지 자유로운 계약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일정한 규율을 적용받으며 머물러야 하고, 구매자와 업주의 요구 사항을 따르게 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노동은 그런 종속적인 상황에 개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기도 합니다.<sup>7)</sup> 저는 성산업의 시설화가 성노동 운동의 맥락에서 충분히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산업의 시설화는 성노동자들의 삶을 통제하는 힘으로 작동함으로써 성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저항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 성산업의 필요에 따라 성노동자들의 몸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힘으로 작동하면서 성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삶을 성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맞춰 조직합니다.

이에 더불어 성산업의 문제가 전체 사회의 통치 체계와 생산 체계의 문제라는 점이 은폐되고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성산업에 대한 규율이나 제도로만 접근할 때, 성산업은 전체 사회와 동떨어진 특수하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재생산됩니다. 그 과정에서 성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삶이 보이지 않게 되고, 사회적 관계가 제한될 때 성산업 내에서 살아가는 과정은 더욱 취약해 집니다. 시설화된 성산업은 성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여기서조차 거부되거나 밀려난 사람들에게는 시설화된 지원 시설이나 홈리스한 상황, 또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나 자원 정도 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결국 성노동자들은 성산업 내에서 불법화된 존재로 일을 하면서 단속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성매매 피해자로서 피해 지원 시설로 가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성산업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매순간은 범법 행위 또는 피해 상황으로만 인식되고,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을 통한 ‘탈성매매’ 외에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사라지고, 성노동자들은 시설화된 성산업과 시설화된 지원 시설 사이에서 시설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그 선택조차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구요.

성노동자의 시설화된 삶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인 지원만이 선별적으로 주어지고, 성노동자와 성노동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알선이나 구매 같은 시장화된 관계 외에 동료 시민으로서의 관계가 형성될 수 없을 때, 성노동자가

7) 노동법은 근대의 시민법의 기본 원리인 소유권 보장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주의 원칙 등이 임금노동관계에 그대로 적용될 때,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 조건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방치되고 해고 또한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문제, 장시간 노동 및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해도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노동자의 잘못으로 귀속되는 문제, 노동자의 단결 활동 또한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거나 고용계약 위반 행위로 형사 범죄나 민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문제 등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고안되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노동의 개념은 비록 플랫폼 자본에 의한 영세 자영업자의 종속화와 플랫폼 노동자의 재량화를 통해 도전받고 있고, 법상의 ‘근로자’ 개념 다변화나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언어들이 논의되는 과정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노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노동력 대한 지배, 결정과 같은 인적 종속성, 생계를 위해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경제적 종속성 등을 기반으로 한다.

성산업 내에서 겪게 되는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것도, 성산업 바깥에서 살고자 ‘탈성매매’하는 것도 개인이 알아서 잘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됩니다. 당장 성산업 내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성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수십 년 간 성산업을 경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산업 밖의 사회는 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계 맺는 역량을 키워나가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 맺기에 실패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지원이나 운동으로 성판매자들이 모두 탈성매매하고 성산업을 사라지는 것도, 성산업의 노동 조건이 드라마틱하게 개선 되어서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총체적인 상황을 전환하기 전에는 그러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성산업에 대한 논의와 토론에 앞서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의 시설화에 더불어 성산업의 시설화, 그리고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는 성노동자의 딜레마, 결과적으로 성노동자와 동료하기에 실패하는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바쁜 시간 내서 와주셨으니까, 이런 현실을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제안하고 주장하는 게 어떨까 해서 고민해봤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는 각자의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자리이기를 바라는 만큼, 운을 띄우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의 공공성과 삶을 향유하기 위한 자원의 보장입니다. 어찌 보면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텐데요. 경제적 열악함이 홈리스한 상태로 이어지고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을 미끄러트리는 사회에서 성산업과 시설을 양자택일 해야 할 때,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주거의 공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돌봄의 사회화가 돌봄의 시장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 주거의 공공성 보장은 단지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을 넘어 사회적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는 모든 성노동자가 경제적인 동기만으로 성산업으로 향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그게 아니면 굶어 죽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에는 친권자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통제되는 가운데 성소수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관계 맺을 자원이 없어서 성노동을 시작했고, 이후에는 서울 근처에라도 눌러앉아서 돈이라곤 안되는 인권 운동을 하고, 먹고 사는데 전혀 도움 안되는 페미니즘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싶어서 성노동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제가 만났던 다양한 성노동자들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생존을 넘어 삶을 향유하기 위한 자원이 오로지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달려있는 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저마다의 욕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생산에 동원하고, 그 과정에서 가진 자원과 바라는 삶 사이의 갭이 큰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있으며, 그 상황이 다시 성산업의 문제와 연결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노동자와 동료 하기입니다. 시설화가 시설 내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설 바깥의 사회와 관계 맺지 못하도록 미끄러트리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저는 지원 시설과 성산업의 시설화가 문제라는 걸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성노동자와 동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과 부대낌을 성노동자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대신 동료 시민으로서 존중하고, 잘 갈등하기도 하고, 연대하기 위한 책임을 모두가 인식할 때 우리는 정말로 시설화에 저항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성노동자들 또한 미혼모, 탈가정 청소년, 홈리스, 장애인, 비국민, HIV/AIDS 감염인, 다른 성노동자 등 시설을 경유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동료 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 우리는 성노동자, 미혼모, 탈가정 청소년, 홈리스, 장애인, 비국민, HIV/AIDS 감염인이 완전히 분절된 인구집단이 아니라 시설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인구화 되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런 경계를 넘어 함께 연대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적인 결말은 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행사를 함께 준비한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특히 탈시설 운동에 대한 이해가 여러모로 부족한 상황에서 급박하게 준비하다보니 팀원인 림보님과 아정님께 여러모로 조언을 많이 구했습니다. 감사하다는 이야기 꼭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시설사회 저자분들과 장애여성공감에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그분들의 고민과 운동을 이 토론문에서 엄청나게 베껴 쓴 것에 대해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멈추기보다 저의 운동과 정치가 장애 여성의 운동, 불구의 정치와 잘 닿을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 해나가겠습니다.

여름님과 해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여름님 발제를 들으면서는 그렇게 늘어났던 요보호여자시설이 80년대 이후 감소하게 된 배경과 이후 요보호여자시설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시설화는 한편으로 다양한 생명들을 인구화하고 분리해서 관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요보호여자시설에 수용되었던 이들은 또 어떤 이름으로 인구화되고 시설화된 삶을 살아갔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수님의 발제를 들으면서는 인터뷰이분들의 증언과 해수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가 궁금해졌는데요. 성노동자들을 단순히 서비스의 소비자로 만드는 시장화의 함정에 빠지거나 계속해서 성노동자들을 시설화의 굴레에 가두지 않으면서, 어떻게 삶의 공간을 확보하고 한계 상황에 놓인 성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해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